

第11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兒童委員協議會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共同住宅의管理와관련된分爭調整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8面
3. 都市計劃施設(旅客自動車停留場)·用度地域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15面
4. 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7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회의회조례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2001. 6. 1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5월 2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6. 8)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2000.10.25)되어 우리 구 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

- 위원의 업무(안 제2조)
- 위원의 정수(안 제3조)
- 위원의 위촉(안 제4조)
-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임기 단축(안 제6조)

다. 개정근거

-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정 성 수)

가. 개정 이유

-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000.1.12)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 권한 주체가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이전되었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동년 10월 25일자로 위원의 임무, 정수, 위촉, 임원임기 등이 규정된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등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신설조항
 - 위원의 임무(안 제2조)
 - 위원의 정수(안 제3조)
 - 위원의 위촉(안 제4조)
 - 위원의 임기(안 제5조)
- 변경사항
 - 조례명 :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
 - 회장 및 부회장 임기 : 3년 ⇒ 2년(안 제6조)
- 문안정비 및 자구수정
 - 제1조(목적)
 - 제6조(협의회 구성)
 - 제7조(협의회의 기능)
 - 제9조(회의수당 등)

다. 검토의견

조문별 검토

현 행	개 정 안	검 토
<p>【명 칭】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 조례</p>	<p>【명 칭】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운영에 관한조례</p>	<p>○아동복지 업무가 자치구의 고 유업무로 법제화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명칭 변경 타당</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목적 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 에 의하여 한다..</p>	<p>○설치 근거법 추가 및 문안정비 사항으로 타당</p>
<p>신 설</p>	<p>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p>	<p>○아동위원의 활동 임무를 부여 한 것으로 타당</p>
<p>신 설</p>	<p>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 2명으로 한다.</p>	<p>○종전 서울시 폐지조례에는 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여 건상 2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 하며 ○향후 동구역 개편 등 여건변동 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추어 조 례를 개정하여도 무방함</p>
<p>신 설</p>	<p>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위촉한다. 1. ~ 2. (생략)</p>	<p>○위원의 추천 및 위촉방법, 자격 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p>
<p>신 설</p>	<p>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한다.</p>	<p>○종전 서울시 폐지조례에는 위 원임기가 3년이었으며 2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비적임자 조 기퇴출, 관심있는 전문인 조기 영입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 위촉기간 단축으로 임명절차상 번거로움과 짧은 기간으로 인 하여 위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 축될 가능성이 있음</p>

현행	개정안	검토
제2조(협회의의 구성) ①협회의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②.....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④	제6조(협회의의 구성) ①협회의는 위원으로 ②.....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④ 제2조와 같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성은 필수적이며 기존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함에 따라 임원 임기를 조정된 것으로 타당
제3조(협회의의 기능) ①협회의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수행 2.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의 직무에 4.의 직무를 ②.....의 직무에	제7조(협회의의 기능) ①..... 1.의 임무수행에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의 임무에 4.의 임무를 ②.....의 임무에	○문안 및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
제4조(협회의의 회의 등) ①~②	제8조(협회의의 회의 등) ①~②【현행 제4조와 같음】	○협회의의 개최방법과 의결정수 등을 정한 것으로 타당
제5조(여비 등) 협회의의 회원은 명예.....에서 여비.....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은 명예.....에서 회의수당 등	○현실에 맞도록 문안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
제6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현행 제6조와 같음】	○협회의 운영규정을 정한 것으로 타당

□ 종합의견

- 안 제2조의 위원의 임무, 안 제3조의 위원의 정수, 안 제4조의 위원의 위촉 등은 아동위원 운영에 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로서 정하려는 것이므로 신설함이 타당하며
-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위촉기간의 단축으로 집행부에서 임명절차상 번거로울 수 있고, 짧은 위촉기간으로 인하여 위원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집행부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하여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자는 계속 유임시킬 수 있는 반면, 비책임자는 조기퇴출시키고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은 전문인사를 조기에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또한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의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것은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함에 따른 것이며
- 기타 조례 명칭 변경과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6조의 협의회 구성, 안 제7조의 협회의의 기능, 안 제9조의 회의수당 등의 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아동복지 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로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문안을 정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 >

- ①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2000.1.12)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 - 폐지조례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명으로 한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의 정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폐지(2000.10.25)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현수한 위원, 선상선 위원, 김정대 위원, 유찬중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병만, 사회복지과장 최용순)

문) 청소년선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운영 여부와 아동위원협의회와의 차이가 있습니까?

답) 청소년선도협의회는 청소년법에 의해 구성된 협의회로서 현재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동위원협의회는 관련근거법인 아동복지법에 조례로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38명의 위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문) 아동위원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아동위원의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 부자가정 후원, 춘계 아동 청소년 캠페인, 모자가

정 캠프 지원, 동별 틈새가정 지원, 사랑의 연결고리 참여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문)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회의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답) 아닙니다.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아동위원이 그대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 기존 아동위원은 지난 5월말로 임기가 모두 끝나서 현재 새로 구성하기 위해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활동적인 분을 추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문) 그러면 부칙②의 경과조치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답) 그 조항은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선상선 위원 수정(안) 동의

○ 부칙 중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1. 6. 8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부칙②의 경과조치는 기존의 아동위원이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도 아동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두는 일반적 경과규정이나,
- 기존 아동위원이 금년 5월말로 임기가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새로운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칙②의 경과조치는 불필요 조항이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

2. 수정골자

- 부칙 중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를 삭제

2.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6. 1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5월 2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5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6. 8)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제정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심사·조정을 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상호간 분쟁 등을 심사·조정함(안 제3조)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로써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안 제7조제1항)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분담함

다. 제정근거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주기 58510-1734(2000. 7.21)호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지시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제정 이유

-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99년 10월 30일에 법이 개정됨에 따른 제정임

나. 주요 골자

- 위원회 구성
 - 10인 이상 20인 이하(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조교수 이상, 건축사, 세무사, 구의원 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
- 위원회 권능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심사 및 조정·자문

다. 관련법 규정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모법 규정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

- ①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령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2(분쟁조정위원회)

- ①시장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의 명령조정권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①시장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권

<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입주자대표회의) >

-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조치
2. 예산·결산의 처리
6. 입주자 등의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조례 제정시 통지기간 등에 대한 규정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 심의참고사항

< 공동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범위와 종류)

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축법 제3조 별표 >

단 독 주 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학교기숙사 등으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3층 이하, 19세대 이하 연면적 660㎡ 이하
	공 관	
공 동 주 택	아 파 트	5층 이상
	연립주택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상
	다세대주택	4층 이하, 20세대 이상 연면적 660㎡이하
	기 숙 사	

< 공동주택관리령 요지 >

○ 적용범위 : 재개발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건립한 공동주택

○ 관리대상

- ┌ 부대시설, 복리시설 유지 보수
- ├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 ├ 관리비, 징수
- ├ 수선충당금 징수, 적립
- └ 기타 건설부령에서 규정한 사항

○ 관리주체별

- ┌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 ├ 주택관리업체(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승강기식)
- ├ 사업주체
- └ 임대사업자

- 관리방법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서 정한 관리규약안에 의거 계약 체결 운영
- 의결 및 조정기구 : 입주자대표회의(령 제10조제6항제6호)
- 자문기구 : 분쟁조정위원회

마. 조문별 검토

조 문	조 례 안 내 용	검 토 의 건
제1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및 자문 목적	
제2조	조정위원회 구성	
제3조	심사·조정대상을 규정함	
제4조	조정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가능	
제5조	조정 신청의 통지	
제6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조	처리기간, 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작성 완료	
제8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9조	조정 전 합의, 합의서 작성	
제10조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의사 표시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 의견제시는 행정절차법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20일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제12조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등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로 규정	분담, 부담의 구분 검토
제13조	시행규칙	
부 칙	공포일부터 시행	

바. 검토의견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모범규정은 공동주택 분쟁에는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 조정하고 (령 제10조), 2차적으로 구청장이 감독적 조정권(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7)을 행사하며,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의 조정권 행사과정의 자문기능(령 제9조의2)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기능 외에 심사·조정기능까지 부여하여(조례안 제 1조, 제3조, 제10조) 위원회제도의 장점인 민주성, 합의성 등을 최대한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
- 제10조 조정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한 규정의 기간에 대하여 조정통지사항은 당사자 간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 제12조의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신청자 부담이 원칙이나 조례안에서는 신청자 분담으로 규정하여 전액 부담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담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費用

(질의자: 안 재 흥 위원, 오 금 남 위원, 정 병 환 위원)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문) 조례(안) 제7조(처리기간)를 보면 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고 사료되니 40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 조례(안) 제7조의 조정심사기간을 60일로 한 것은 주민들의 분쟁내용 중 법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보다 심도있고 법적인 검토 때문에 최대한 60일의 기간을 정한 것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조례(안)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의 분쟁조정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너무 강압적인 어휘이니 부드러운 용어로 수정하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답) 말씀하신 대로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으며, 공무원이 임의대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에서 요청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문) 조례(안) 제10조(조정·심사)를 보면, 조정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20일 이내로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제12조(비용의 부담)의 “분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부담”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 조례(안) 제10조의 조정안 수락 여부를 15일 이내로 통보토록 한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기 위함이며, 제12조 비용의 부담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둘 이상의 경우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구청과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주민들이 기피하고, 분쟁시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 내세워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가 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를 통하여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적극 수용,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안 재 흥 위원 수정(안) 동의

6.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은 원안가결: 수정(안) 별첨

7.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공동주택등의관리에관련된분쟁조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2001. 6. 8

발 의 자: 재무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합법성 제고와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2. 수정골자

- 제8조제1항 “출입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를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0조제2항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비용의 분담)”을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제1항 “이를 분담한다.”를 “이를 부담한다.”로 한다

3.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견

結果報告書

2001. 6. 1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5월 31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6. 8)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가. 제안이유

- 평창동 148-16일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공람공고하고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여객자동차정류장	평창동 148-16일대	7,736	감)7,736	0	'79. 6.26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

지 역		위 치	면적(m ²)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창동 148-16일대	6,893	여객자동차정류장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평창동 148-9 일대	843	여객자동차정류장해제지역 (자연경관지구)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안 재 홍 위원)

(답변자: 하 철 승 도시관리국장)

문) 평창동 148-9일대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 주변지역의 여건과 비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시는 일단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승인받는 데 유리합니다.

4. 意 見 採 擇 : 없 음

5.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4.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審 査 報 告 書

2001. 6. 1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5월 3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2001. 6.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제안이유

- 200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사업 중 단가, 요율, 계획변경에 따른 기존사업비 부족분과 시급한 구정현안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			금회추경	증가율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합 계	160,224,542	155,365,972	151,883,699	3,482,273	4,858,570	3.13%
일반회계	127,696,707	119,924,671	117,167,117	2,757,554	7,772,036	6.48%
특별회계	32,527,835	35,441,301	34,716,582	724,719	-2,913,466	-8.22%
의료보호	4,497,369	4,499,163	4,499,163	-	-1,794	-0.04%
주 차 장	28,030,466	30,942,138	30,217,419	724,719	-2,911,672	9.41%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정 성 수)

가. 추경 현황

총예산

(단위:천원)

구 분	당초예산	추 가 예 산		확정될 예산	증감율(%)
		금회추경	간주처리 (6회까지)		
합 계	151,883,699	4,858,570	3,482,273	160,224,542	3.13
일반회계	117,167,117	7,772,036	2,757,554	127,696,707	6.48
특별회계	34,716,582	-2,913,466	724,719	32,527,835	-8.22

추경재원

○ 일반회계

(단위:천원)

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시설공단추가수입
7,772,036	6,673,817	846,844	251,375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합 계	-2,913,466	-2,956,308	+42,842
의료보호	-1,794	+106	-1,900
주 차 장	-2,911,672	-2,956,414	+44,742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별

○ 일반회계

(단위:천원)

2001 순세계잉여금			발 생 요 인 별		
계	금회추경반영	2001기존예산반영	계	세입초과징수	불용액 등
19,673,817	6,673,817	13,000,000	19,673,817	5,281,897	14,391,920

○ 특별회계

(단위:천원)

2001 순세계잉여금			감소요인별
계(C=B-A)	2000결산결과(A)	2001예산반영(B)	신교동 66번지 외 9필지 주차장부지 매입가 55억원 2000년 12월중 지출
-2,956,308	18,370,688	21,327,102	

□ 세입된 간주처리 내용 : 별첨1

(단위:천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수	금액	회수	금액
3,482,273	6	2,757,554	2	724,719

□ 세출 편성별

○ 일반회계 재원 배분

(단위:천원)

합 계		경 상 비		투 자 사 업 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4	7,772,036	23	2,935,655	42	4,836,781
점 유 율		37.8%		62.2%	

□ 위원회별 세출추경예산 규모(일반회계)

(단위:천원)

계	운영위원회		시민행정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7,772,036	27,000	0.34%	6,065,678	78.04%	1,679,358	21.60%

○ 경상비 주요 편성내용 : 23건 ----- 29억 3,565만 5,000원

-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3억 9,650만 5,000원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족분 3억 5,434만 9,000원
- 폐합성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1억 2,768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507만 4,000원
-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8,177만 2,000원
- 상용직 인건비 부족분 1억 7,005만 8,000원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추가 4억 5,428만 3,000원

○ 투자사업비 주요 편성내용 : 42건 -----	48억 3,678만 1,000원
- 교남동청사 신축 부족분	7억 2,000만원
- 종로5·6가동청사 신축 부족분	9억원
- 명륜3가~4가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 송인1동 61~59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원
- 계동 36~원서동간 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 제1별관 옥상 증축	7,000만원

나.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29쪽에 의하면 예산편성 시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먼저 보완 및 수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투자사업비 10건 중 8건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음
- 80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억 5,42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금년 4월부터 청소년문화센터와 동부여성문화센터, 광화문 광고물사업 등 3개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새로이 추가되어 이의 운영에 필요한 신규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강사료, 기타 경비 등으로 2억 9,88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위탁사업비에서 인력증원 1명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과 경상경비 부족분 1억 5,545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임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인력 1인당 년평균 총소요액이 일반직이 1,700만원 업무직(기능직)이 1,400만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인력은 한번 채용하면 퇴직 시까지 계속 인건비가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인력 증원 13명에 대해서 업무량 배분과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운영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84쪽 종로1~4가동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종로1~4가동 문화복지센터를 동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문화복지센터를 인근지역 건물로 독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며, 이전대상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서 현재 건물 안전진단 중에 있으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의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비 집행이 불확실한 상태임.
 다만 예산을 조기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본 건물에 대한 사용승락을 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음
 교남동 및 종로5·6가동청사 공사비 중 금년도 부족분 16억 2,000만원과 무악동 및 부암동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비로 8,42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공사비 책정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88쪽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쓰레기 처리비가 당초 6,384만원에서 1억 9,152만원으로 1억 2,768만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폐합성폐기물을 난지도처리공장에서 무상으로 처리하던 것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반입 금지된 것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대행처리지역 10개 동에서 발생하는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금년 3월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처리하도록 구 방침을 정함

에 따라 이의 처리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폐기물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구 창신동에 소재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및 집하장 공간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함으로써 이의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대행처리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직영처리하였을 경우와 종전대로 대행처리하였을 경우 소요비용 등을 파악 분석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 양쪽의 실익을 비교하여 결과에 따라 구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지방재정법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의한 것
- 2. 제40조 규정에 의한 이월금(사고,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39조(구청장의 예산전용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금액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투·융자 심사의 의무화)

제2항제2호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6조(중기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본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2001 예산편성지침(p29)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 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

【별첨1】

세입된 간주처리내역

(단위:천원)

회계별	일 자	목	사 업 내 용	배정액(간주액)	
총 계	계			3,482,273	
	일반회계			2,757,554	
	특별회계			724,719	
일반회계	소 계				
	2월 1일	조정교부금	염화칼슘 구입비 외 1건	72,000	
	2월 7일	조정교부금	청소년유해업소정비 지원 외 2건	113,800	
		시비보조금	노인환자 원의약국 약제비 지원	17,754	
	3월13일	조정교부금	쪽방거주자 지원, 역사문화탐방로 관리지원	410,358	
		국고보조금	민방위훈련 시책사업비 외 1건	45,640	
		시비보조금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지원 외 2건	223,689	
	4월17일	조정교부금	옥외광고물 특별지원 외 7건	422,495	
		국고보조금	주민등록증 발급비 외 9건	45,030	
		시비보조금	제14회 인사동전통문화축제 외 24건	610,918	
	5월 7일	조정교부금	홍제천 복개 지상상가 안전진단비 외 2건	77,000	
		국고보조금	한국방문의 해 국민참여 외 2건	4,170	
		시비보조금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840	
	5월22일	지방교부세	금선사, 문수사 등 전통사찰정비	600,000	
		조정교부금	시립박물관 문화사업지원 외 3건	63,600	
		국고보조금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외 1건	25,130	
		시비보조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외 1건	25,130	
	특별회계	소 계			724,719
		2월 1일	시비보조금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관리 보조금	224,719
3월13일		시비보조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보조	500,000	

【별첨2】

중·장기재정계획 대상 사업현황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천원)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중기재정 계획여부	소관과
			금회	기정	합계		
1	전산장비 구입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7,731		7,731		지 적 과
2	무악공원 조성공사	유휴지 활용 시책사업	150,000		150,000	미반영	공원녹지과
3	쉼터 조성공사	부암동 28-1 (109m ²)	23,170		23,170	미반영	공원녹지과
4	쉼터 조성공사	창신1동 78 (62.1m ²)	11,825		11,825	미반영	공원녹지과
5	쉼터 조성공사	부암동청사 앞 (20m ²)	8,405		8,405	미반영	공원녹지과
6	쉼터 조성공사	송인1동 64-1 (848m ²)	30,000		30,000	미반영	공원녹지과
7	도로 건설	명륜3가 137-8 ~명륜4가 178-3	500,000		500,000	미반영	토 목 과
8	도로 건설	계동39~원서동76간	250,000		250,000	미반영	토 목 과
9	제설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노후장비 교체	4,000		4,000		토 목 과
10	종로1~4가동 주민문화 복지센터 건립	주민문화복지센터 신축 등	80,000		80,000	미반영	자치행정과
계		10건	1,065,131		1,065,131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김복동 위원, 오금남 위원, 현수한 위원, 이형술 위원, 홍승태 위원, 박종식 위원, 홍기서 위원, 선상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재무국장 동연호, 생활복지국장 이병만,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오종석, 의회사무국장 황의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태)

문) 추가경정예산에 불요불급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에도 교남동청사 지하 수영장 건립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작년에 예산편성시 설계에 수영장건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답) 2001년도 예산편성시 총괄적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당시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
다.

문) 환경미화원 인건비 13억 9,600만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답) 본예산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 3,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답) 통상적으로 1년 동안 가로등을 유지 보수하는 데 1억 2,7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며, 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 쉼터는 현재 몇 군데 조성되었습니까?

답) 주민 쉼터공간은 작년부터 시행되어 효자동, 교남동과 신설동 로타리, 청계천8가 로타리 등 4군데
에 설치되었습니다.

문)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광화문광고물사업 등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답)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기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구민에
게 접근하는 데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5. 討 論 要 旨

○ 김 복 동 위원의 수정안 동의

- 일반회계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문 : 수정가결
- 특별회계 세입부문 : 원안가결
- 특별회계 세출부문 : 원안가결

6. 修正案의 要旨 : 별 침

7. 審 査 結 果

- 일반회계 : 축조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